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장	운영위원
성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e-mail 주소 :	@		
직장*	직장명	직위		
직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희망 ID :	희망 비밀번호		
최종출학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 (모든 회원 공통)	입금처	우 체 국 703108-01-002649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연회비	정 회 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항목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가)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내 (우당교육관 404호)
(나) TEL (053) 950-5820 FAX (053) 950-5820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
http://www.kssea.or.kr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88호
2006.5.31.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발행인 박종렬 ■편집인 정금현, 권현정
■주소 (702-701)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내(우당교육관 404호)
■TEL 053-950-5820 ■FAX 053-950-5820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 | 론 |

‘경쟁구조’의 타당성 검토

정영수 (본회 부회장, 충북대)

우리의 삶은 끝없는 경쟁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경쟁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경쟁 그 자체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래서 경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쟁이란 어떤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이 있다. 또한 경쟁의 수준에 따라 문화가 변형된다. 오늘날 경쟁은 거의 국가의 종교가 되다시피 되었고, 일종의 문화중독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쟁에 대한 저항과 문제의식은 시대에 낙후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기 일쑤다. 학교교육은 경쟁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교육 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성공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습성을 길들이기도 한다.

우리의 여가활동은 타인이나 다른 팀을 패배시키는 고도로 구조화된 게임으로 가득 차 있다. 라이벌 관계 속에서 모든 활동이 경쟁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활동들을 경쟁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창조적 활동이란 단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신 방식을 고안하는 틀로 인식되기도 한다.

경쟁의 개념은 구조적 경쟁과 의도적 경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상황 구조적 경쟁 개념이며, 후자는 구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쟁의 태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다. 구조적 경쟁은 외적이며 승 패구조와 관련이 있고 의도적 경쟁은 내적이며 개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들고자 하는 열망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구조적 경쟁에서는 나의 성공은 너의 실패를 요구하는 성격을 내포하며 제로섬 게임

의 구조적 틀을 갖는다. 구조적 경쟁의 본질은 ‘둘 이상의 개인들이 모두가 자신이 성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목적의 희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구조적 경쟁은 몇 몇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자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의도적 경쟁은 구조적 경쟁에 비해 정의 내리기 쉬운 개념이다. 의도적 경쟁은 구조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 회의석상에서 자신을 가장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비록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종의 경쟁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추어 평가하는 예민한 신경증적 사람의 경우도 의도적 경쟁의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이 학급조직이나 조직에서 성취의욕을 유발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예컨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흔히 세 가지 유형, 즉 경쟁적, 협력적, 독립적 수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때로 우리는 경쟁적이기만 하면 목표 지향적 활동과 자신의 표준을 설정하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사실은 아니다. 누구든 경쟁 없이도 자신의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진보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자신과의 경쟁’, ‘자신의 진정한 명예를 위한 투쟁’ 속에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자신의 실적과 기록 또는 자신의 목표 설정과 현재의 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수단적 가치 속에서 경쟁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진정한 경쟁력 제고의 수단은 ‘경쟁 붙이기’가 아닌 ‘협력’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협력분위기 형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상을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쟁에 관한 한 몇 가지 신화화한 가정들이 있다. 이러한 가정들은 상당한 정도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경쟁이 전제로 하는 네 가지 신화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에 있어 경쟁은 불가피한 사실이다(inevitable). 둘째,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more productive). 셋째, 경쟁은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more enjoyable). 넷째, 경쟁은 자아신뢰감을 심어주는 인성 특성을 형성해준다(likely to build character)는 것이다.

요컨대, 경쟁은 본질적으로 양면성, 즉 바람직한 측면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경쟁력 제고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경쟁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경쟁과 경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부패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최고’가 되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쟁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하여 당연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경쟁에 비하여 적절한 보상에 초점을

둔 협력체제는 개인 및 집단의 생산성, 개인의 학습,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 과업태도, 그리고 다른 집단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데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쟁은 바람직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기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신념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의 틀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쟁에 대한 신화적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경쟁을 협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쟁을 초월하여

우리는 경쟁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쟁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경쟁’의 양식은 그 ‘경쟁’ 바로 그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경쟁력 제고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경쟁과 협력의 조화로운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과 경쟁은 이율배반적 관계에서 이해될 성격의 것은 아니다. 플러스 섬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을 초월한 협력 연계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구성원 모두의 자율적 의도적 경쟁의 구조의 틀을 구축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의 권위와 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구조의 틀을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초월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즉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자들이 경쟁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론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왔던 지난날들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미래지향적 기준에 비추어 당연히 여겨왔던 오늘을 재평가함으로써 자기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무의식적 오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논 | 단 |

힘 있고 통합된 '교육모임'을 만들자

성 기 옥 (서울교육연수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있다. 관훈클럽은 언론연구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으로 1957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964명이다. 그동안 관훈클럽은 언론인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특히 뉴스의 중심에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퍼붓는 관훈토론회는 80년대에 방송 중계로 널리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높은 권위있는 토론회로 주목받고 있는데 벌써 100회를 넘어섰다고 한다. 관훈클럽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지켜보다 보면

‘왜 우리 교육계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 우리도 이슈가 되는 교육정책을 공개 토론을 통하여 그 정책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촉구하면서 추진했다면 지금보다 더 넓은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실제로 정책 입안 부서에 근무해 본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련 이권단체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같은 노력도 절대적 상황논리에 휘말려서 ‘그 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진실로 안타까웠던 일은 그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교육계에도 언론계의 관훈클럽과 같은 권위 있는 사적 모임이 있다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 현상들은 공개토론을 통하여 폭 넓은 이해 층을 구성해 주기 때문에 외부의 관련 단체의 주장이나 실력행사, 혹은 도중에 정책책임자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 본질’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교육계에도 사적 모임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모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급 학교별 직위별 모임인 총장회, 교수회, 교장회, 교감회, 교사회 등을 비롯하여, 전공별 모임인 학회, 협의회 및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막상 이 모임들의 전체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통합하는 대표성 있는 토론 모임은 없는 것 같다. 이 모임들은 특정한 성격을 갖고 결성된 모임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발전과 입장만을 대표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연대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모임이 생기고 있지만, 이 모임들도 교육계 안팎의 여론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즈음 각 학교들은 합법화된 교원단체들과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이 많이 늘고 있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각양각색의 주장을 하고 있어 학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에는 학교장이 자살을 하고, 교사가 학부모에게 교실에서 뺨을 맞고, 학생이 교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학부모가 여교사를 무릎을 꿇게 하는 사진이 신문에 나왔다. 이러한 일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자들은 매우 참담한 마음이 들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기저하는 곧 자신의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무도 이것을 사회문제화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쉽게 나서질 못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폭력 문제, 자살 등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학교는 실력있고 성실한 우수한 교사들,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교육 환경,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학생들의 성적 등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또 언론에서 학교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천하고 있는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은 밝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일부의 현상이 학교교육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여 학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불안과 학부모의 지나친 경쟁심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외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혹시 일방적이지 않았는지, 대안 없이 문제만 제기하지 않았는지, 나름대로 타당한 정책 대안이 있음에도 게을리 하거나, 폭 넓은 여론을 얻지 못하고 졸속한 정책을 입안했는지, 시급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가며 폭넓게 易地思之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극히 일부의 잘못된 현상을 일반적인 현상인양 과대 포장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학교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 현장을 보다 많이 국민에게 알려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자. 이제는 더 이상의 교육력 소모가 없도록 교육에 대한 여론 통합의 장을 마련할 때이다. 또 이제까지 일부 소수 단체들이 주도해 왔던 교육 여론 형성 과정을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계의 관훈클럽을 창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흔히 21세기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이러한 권위 있고 교육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사적 기구 창설에 스스로 동참하여야 하겠다. 또 이러한 큰 일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기대해 본다.



2006년 학회활동

1. 제1차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 일 시 : 2006년 1월 13일 11시 - 13시
- ▶ 장 소 : 대한민국 학술원 회의실
- ▶ 목 적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 참석인원 : 총 16명

김윤테 노종희 강무섭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강병운 공은배
김성렬 김혜숙 임연기 한유경 허종렬 신상명 정금현 권현정

- ▶ 회의내용
 - 가.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심의
 - 나. 2006년도 예산안 심의
 - 다. 기타 협의
- ▶ 협의보완 사항

가. 교육학회 사무실 구좌신청	기획발전위원회
나. 내실있는 학술행사의 기획	학술대회위원회
다. 교신저자제도 도입여부 검토	학회지편집위원회
라. 학회지 발간시기 변경 검토	"
마. 학회의 사단법인화 검토	규정개선위원회
바. 학생회원제 폐지 검토	"
사. 격년제 디지털 요람 발간 및 요람내용의 전반적인 수정보완	사무국
아. 학회회원 경조사 관리 확대	"
아-1. 「애경사 관리 규정(가칭)」등 제정	규정개선위원회
자. 학술대회 자료집 배부체계 개선	사무국

2. 제2차 분과위원회 개최

가. 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허병기)

- ▶ 일 시 : 2006. 3. 3
- ▶ 참석자 : 허병기, 박삼철, 조동섭,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 학회지 심사절차 :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최종 결정

- 학회지 발간시기 : 학회지 발간시기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현행유지)
- 교육행정학 분야 연구자풀제 도입

나. 국제학술위원회 (위원장 임천순)

- ▶ 일 시 : 2006. 3. 31
- ▶ 참석자 : 임천순, 한유경, 곽재석, 김상길, 최준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 참가일정 : 2006.10.12(목) - 14(토) 2박3일
 - 발표자 : 주철안, 토론자 : 유현숙, 진동섭
 - 기본적인 일정을 결정 후 일본 측과 협조(기관방문 및 투어)

다. 규정개선위원회 (위원장 강병운)

- ▶ 일 시 : 2006. 2. 24
- ▶ 참석자 : 강병운, 조석훈, 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학회법인화 준비단계로 우선 정관과 회칙 제정 운영

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공은배)

- ▶ 일 시 : 2006. 4. 7
- ▶ 참석자 : 공은배, 김동석, 엄상현, 이승희, 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국가 교육경쟁력 지표 개발 연구' 추진 결정

마. 학술편찬위원회 (위원장 진동섭)

- ▶ 일 시 : 2006. 4. 14
- ▶ 참석자 : 진동섭, 김희규, 신현석, 최준렬, 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학술진흥재단 사전편찬사업 계획 및 신청(연구책임:진동섭)

바. 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 임연기) : 교육사회학회와의 공동세미나 협의

- ▶ 일 시 : 2006. 3.10(1차), 2006.3. 24(2차), 2006.4.14(3차)
- ▶ 참석자 : 김경근, 황기우, 임연기, 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 일시 및 장소 : 2006.8.25,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예정)
 - 공동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 한국교육개발원 지원(1,500만원)
- ▶ 주요 프로그램
 - 발표자 및 토론자 : 발표자 8인, 토론자 8인, 사회자 1인

사. 기획발전위원회 (위원장 공은배)

- ▶ 일 시 : 2006. 4. 28
- ▶ 참석자 : 공은배, 최준렬, 회장, 사무국장
- ▶ 회의결과 : 신교육행정학총서(교육행정학사례연구 관련 연구) 검토

3.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 일 시 : 2006. 5.19(금) 11:00 - 14:00
- ▶ 회의결과 :
 - 1) 학회 법인화 : 학회 법인화의 필요성 및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연구 후 재논의
 - 2) 회칙 개정안 : 규정개선위원회의 재검토 후 총회에 부의
 -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 : 원안대로 심의·의결
 - 4) 학회지 편집발간 규정 개정안
 - 논문심사·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관장
 - 논문 분량 상한선에 관한 사항 : 현행 유지(25쪽 이내 규정 준수)
 - 5) 교육학회 구좌 신청
 - 교육개발원 이전 및 교육학회 이전을 조건으로 구좌신청을 승인
 - 교육학회 구좌신청 : 1구좌 2,000만원

4. 임시총회 개최

- ▶ 일 시 : 2006년 5월 27일 오후 5시
- ▶ 장 소 :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강의1동 302호
- ▶ 회의결과 :

가. 학회 연회비 인상

 - 현행 연회비 : 학생회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기관회원 5만원
 - 연회비 인상안(2007년부터 적용)
 - 학생회원 : 2만원(현행유지)
 - 일반회원 : 3만원 → 5만원
 - 기관회원 : 5만원 → 10만원

나. 평생회원제 도입(2006년 6월 1일 시행)

- 자격 : 만 55세 이상의 회원
- 평생회비 : 40만원

- 다. 교육행정학 전문서 편찬사업 계속적 추진 : 제18, 19, 20권
- 라. 교육행정사례모음집 발간 추진 : 우석대 최준렬(책임연구)
- 마. 교육행정학사전편찬 연구 추진 : 서울대 진동섭(책임연구)
- 바.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 시행【붙임 1】
- 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개정【붙임 2】
- 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편집·발간규정 개정【붙임 3】





2006년 위원회별 사업계획



2006년 사업목적

- 차세대 교육행정학의 발전 방향 모색
-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지식기반 확대
- 교육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 교육행정학회의 현장지원 강화
- 교육행정학 회원의 저변확대

1. 기획발전위원회 사업계획

가. 학회 소식지 발간(연4회 발간) : 2006년의 화두/한국적 교육행정학의 방향 모색

▶ 제87호(2006년 2월) 발간

• 주 론 : 회장

• 논 단(Ⅰ) : 김이경(KEDI)

• 논 단(Ⅱ) : 임준희

▶ 제88호(2006년 5월)

• 주 론 : 부회장

• 논 단(Ⅰ) : 성기욱(서울시교육연수원)

▶ 제89호(2006년 8월)

• 주 론 : 기획발전위원장

• 논 단(Ⅰ) : 자원자

• 논 단(Ⅱ) : 자원자

▶ 제90호(2006년 11월)

• 주 론 : 학회지편집위원장

• 논 단(Ⅰ) : 자원자

• 논 단(Ⅱ) : 자원자

나. 교육행정최고경영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 교육행정학사례 모음집 연구로 변경·추진

다. 기금모금, 대외홍보 등 학회발전 계획 수립

2. 학술대회위원회 사업 계획

가. 정기학술행사

▶ 춘계 학술발표대회(제139차)

• 일 시 : 2006년 5월 27일

• 장 소 : 경인교육대학교(안양캠퍼스)

• 주 제 : 교육행정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 및 자유주제 발표

• 사 회 : 임연기(공주대) 조동섭(경인교대)

• 발표자 : 최준렬(우석대) 박소영·송선영(KEDI) 손희권(명지대) 양정호외(성균관대)
박준형(고려대) 이정미(서울대) 박선행·이안남(조선대)

▶ 하계 학술발표대회(제140차) - 한국교육사회학회와 공동세미나

• 일 시 : 2006년 8월 25일(예정)

• 장 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예정)

• 후 원 : 한국교육개발원(1,500만원 지원)

• 주 제 : 교육의 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 추계 학술발표대회(제141차)

• 일 시 : 2006년 10월 하순

• 장 소 : 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 개최장소

• 주 제 :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구조 / 한국교육행정학의 연구방법(안)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

▶ 제34차 연차대회 및 동계 학술발표대회(제142차)

• 일 시 : 2006년 12월 초순

• 장 소 : 교육문화회관

• 주 제 :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경쟁력 향상 방향(안)

※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나. 특별학술행사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와 공동세미나

• 일 시 : 2006년(미정)

• 장 소 : 사학연금회관

• 주 제 : 미정(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교육발전 방향 탐색)

3. 국제학술위원회 사업계획

가. 제13회 한·일 공동 국제세미나(일본)

- ▶ 일 시 : 2006년 10월 12일(목) ~ 13일(금)
- ▶ 장 소 : 국립 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동경)
- ▶ 대주제 : 고등교육개혁의 방안과 과제 :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

2005년(한국) 고등교육개혁의 방안과 과제(1) : 고등교육기관의 통합 및 구조 조정방안
 2006년(일본) 고등교육개혁의 방안과 과제(2) :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
 2007년(한국) 고등교육개혁의 방안과 과제(3) : 고등교육시장의 현황과 과제

- ▶ 발 표 : 주철안(부산대), 토론 : 유현숙(KEDI), 진동섭(서울대)
- ▷ 일 정(안)
 - 10월 12일(목) / 오전 : 김포에서 하네다 출발
 오후 : 일본 교육시설 방문 혹은 교육청 등 기관방문 프리세션
 - 10월 13일(금) / 오전 : 교육시설 혹은 기관방문
 오후 : 국제 세미나(인도네시아, 미국 공동)
 - 10월 14일(토) / 오전 및 오후 : 관광 등

나. 기타 교육행정학의 지식기반 관련 국제세미나(학술진흥재단 과제와 연계) 추진

4. 학회지편집위원회 사업계획

가. 학회지 심사 및 발간(연4회 발간)

- ▶ 제24권 1호(통권62호) 발간
 - 발 간 일 : 2006년 4월 30일
 - 접수마감 : 2006년 2월 28일
 - 논문편수 : 15편 (탈락률 46.2%)
- ▶ 제24권 2호(통권63호)
 - 발 간 일 : 2006년 7월 31일
 - 접수마감 : 2006년 5월 31일
 - 논문편수 : 약 20편
- ▶ 제24권 3호(통권64호)
 - 발 간 일 : 2006년 10월 31일
 - 접수마감 : 2006년 8월 31일
 - 논문편수 : 약 20편
- ▶ 제24권 4호(통권65호)

- 발 간 일 : 2006년 12월 중
- 접수마감 : 2006년 10월 31일
- 논문편수 : 약 20편

5. 학술편찬위원회 사업계획

가. 교육행정사례모음집 발간사업 계획수립(기획발전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

나. 교육행정학 사전편찬 사업 추진

6. 규정개선위원회 사업계획

가. 규정 개선 계획수립

- ▶ 규정 개선 계획 수립
- ▶ 규정 개선(안) 구상
- ▶ 운영위원회 상정
- ▶ 임시총회 상정
- ▶ 집행

나. 회칙개정안 검토

다. 학회지편집·발간규정 개정안 검토

7. 정책연구위원회 사업계획

- ▶ 정책연구 계획 수립
- ▶ 정책연구진 구성
- ▶ 연구 위촉
- ▶ 연구수행

8. 사무국 사업계획

가. 총회 개최

- ▶ 임시총회 : 2006년 5월 27일(토) 17:00
- ▶ 정기총회 : 2006년 12월

나. 운영위원회 개최

- ▶ 제1차 운영위원회 : 2006년 1월 13일
- ▶ 제2차 운영위원회 : 2006년 5월 19일
- ▶ 제3차 운영위원회 : 2006년 12월(예정)

다. 각종 위원회 개최

- ▶ 학술대회위원회 : 연 4 ~ 6회 개최
- ▶ 학회지편집위원회 : 연 4회 개최
- ▶ 기타 위원회 : 연 1 ~ 2회 개최

라. 학술대회 논문집 발간

- ▶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 ▶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 ▶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 동계 연차대회 논문집
- ▶ 한·일 공동세미나 자료집
- ▶ 교육행정학 분야 관련 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 ▶ 대한 사립 중·고등학교장회의 공동세미나 자료집

마. 학회지 발간

- ▶ 제24권 1호(통권62호) : 2006년 4월 30일 : 발간
- ▶ 제24권 2호(통권63호) : 2006년 7월 31일
- ▶ 제24권 3호(통권64호) : 2006년 10월 31일
- ▶ 제24권 4호(통권65호) : 2006년 12월 중

바. 한국교육행정학회 디지털 요람 발간(격년제)

- ▶ 발간일 : 2006년 8월 말

사. 학회 회원 경조사 관리 확대

- ▶ 경사용 및 조사용 회기 제작
- ▶ 애경사 회원통보

아. 기타 사업

- ▶ 학회 현판 제작



2006년 예산안



1. 2006년 재정개요

(단위 : 원)

회계구분	항 목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
일반회계	수입 지출	97,908,431 97,908,431	99,491,506 99,491,506	105,192,596 105,192,596
기금회계	수입	127,308,386	132,146,104	
연구비회계	수입 지출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교육부 연구비

2. 일반회계 예산

1) 수입

(단위 : 원)

항 목	2006예산	산출근거	2005결산	2004결산
1. 이월금	15,142,596	이월금	13,180,227	18,324,460
2. 회비 · 입회비 · 2006년도 회비	12,000,000 2,000,000 10,000,000	200×10,000 2005년도 결산실적 근거	11,420,000 (입회비+회비)	11,270,000 1,110,000 10,160,000
3. 수익자부담경비 · 논문심사 및 게재료 · 학술대회 참가비 · 한일세미나 참가비	46,000,000 32,000,000 5,000,000 9,000,000	2005년도 결산실적근거 " 2003년도 결산실적 근거	37,650,000 35,580,000 1,670,000 400,000	32,990,000 25,360,000 2,890,000 4,740,000
4. 보조금 및 찬조금 · 학술대회 지원금 · 학술지 발간 지원금 · 출판사 찬조금 · 기관찬조금 · 개인찬조금 · 교보문고 수익금	24,000,000 15,000,000 2,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	2005년도 결산실적근거 2004년도 결산실적근거 안내장, 뉴스레터, 발송봉투	29,942,048 12,500,000 5,698,000 286,000 5,200,000 4,411,400 1,846,648	22,314,448 13,565,800 1,846,648 1,966,000 4,700,000 236,000
5. 연구비 간접경비	8,000,000		7,282,579	13,000,000
6. 기타수입(예금이자)	50,000		16,652	9,523
총 계	105,192,596		99,491,506	97,908,431

2) 지출

(단위 : 원)

항 목	2006예산	산 출 근 거	2005결산	2004결산
1. 인건비 · 사무국장 수당 · 간사 수당	7,200,000 2,400,000 4,800,000	200,000×12월×1명 400,000×12월×1명	7,200,000 3,600,000 3,600,000	7,200,000 2,400,000 4,800,000
2. 한일공동세미나(일본)	6,000,000	2003년 결산근거	6,266,400	4,462,816
3. 여비 · 교통비 · 국내여비	1,600,000 300,000 1,300,000		652,000 200,000 452,000	321,500 221,500 100,000
4. 인쇄비 · 학회지 · 학술대회 발표집 · 뉴스레터 · 학회봉투제작 · 학술대회 프로그램 · 학회요람 · 자료제작 및 복사	30,700,000 22,000,000 6,000,000 - - - 2,000,000 700,000	2005년 결산 근거 4 - 6회 발송봉투(찬조)	28,206,260 22,170,000 2,896,400 0 0 0 3,000,000 139,860	31,432,730 21,498,830 6,959,600 - 220,000 - 2,600,000 154,300
5. 사업비 · 발표, 사회 수당 · 행사준비 · 회의비 · 기념패 · 논문심사 의뢰 · 식·음료	33,600,000 13,000,000 3,000,000 3,600,000 500,000 13,000,000 500,000	2004년 결산 근거 2005년 결산 근거	28,035,770 7,800,000 2,831,200 2,553,550 350,000 12,960,000 1,541,020	28,001,410 12,750,000 1,655,350 948,200 1,212,000 11,020,000 415,860
6. 수용비 · 사무용품 · 공공요금(통신·우편) · 용역비 · 홈페이지유지및관리 · 감사패 제작 · 송금수수료 · 조기 및 현판제작 · 기타	13,350,000 1,000,000 7,000,000 400,000 2,600,000 400,000 200,000 1,000,000 750,000	2005년 결산 근거	12,838,480 1,308,800 7,309,280 224,800 2,418,000 240,000 42,500 - 1,295,100	10,762,560 102,000 6,022,410 300,000 1,839,500 132,000 4,200 - 2,312,450
7. 판공비및업무추진비	1,000,000		1,150,000	700,000
8. 차년도 이월금	11,742,596		15,142,596	15,026,875
총 계	105,192,596		99,491,506	97,908,431

3. 연구비회계 예산

1) 수입

(단위 : 원)

항 목	2006예산	산 출 근 거	2005결산	2004결산
1. 연구과제비	40,000,000		20,000,000	20,000,000
총 계	40,000,000		20,000,000	20,000,000

2) 지출

(단위 : 원)

항 목	2006예산	산 출 근 거	2005결산	2004결산
1. 연구과제수행비	32,000,000		12,717,421	7,000,000
2. 학회간접경비	8,000,000	간접경비 20% 적용	7,282,579	13,000,000
총 계	40,000,000		20,000,000	20,000,000

4. 기금회계 예산

1) 수입

(단위 : 원)

항 목	2006예산	산 출 근 거	2005결산	2004결산
1. 이월금	132,146,104	2005년 결산금액	127,308,386	122,157,542
2. 이자수익	5,021,551		4,837,718	5,150,844
3. 개인발전기금	-			-
총 계	137,167,655		132,146,104	127,308,380

【붙임 2】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개정안



1. 개정의 취지

가. 회장 선출방법의 개선

- 현재 부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 참석 회원수가 평균 60~100명 내외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전체 정회원 수는 1,000명에 이르고 있어 부회장 선출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함.(개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부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부회장 선출 제도의 변경에 따른 부수되는 규정의 변경과 일부 부적합한 자구나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 전임 회장단, 현 회장과 부회장(당연직 운영위원)만이 부회장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은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당연직 이사(현행 당연직 운영위원)가 30인 이상 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의 경륜을 반영하면서 봉사적인 회장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에 의한 후보자 추천 제도는 유지하기로 함

나. 운영위원회의 이사회 전환 및 기능 명료화

-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회로 전환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함

다. 학회 기관 구성의 변경

- 학회의 사업목적을 위해 설치 가능한 기관을 규정하여 각 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 함
- 특히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원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함
- 임원의 범위에서 사무국을 제외함

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시기 명시적 규정

- 부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학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부회장 선출시에 우편투표 방식을 통해 전체 정회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 학회 임원명칭 및 학회의 기관구성을 변경함
-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구체화

3.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회원에는 학생회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현을 수정하고, 기관회원의 권리도 분명하게 함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감사 2인 5. 사무국장 및 간사 각 1인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약간 명(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4. 감사 2인
※ 운영위원을 이사로 명칭 변경, 사무국장 및 간사를 임원에서 제외함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승계한다. 2. (좌동)부회장(차기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추천한 자들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① 당연직 운영위원 전원으로 부회장(차기회장) 추천위원이 된다. ② 부회장후보추천위원은 연차대회 10일전까지 2인의 후보를 우편으로 추천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에 도착한 부회장후보추천 우편봉투를 밀봉된 채로 보관하여 연차대회 일에 부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④ 부회장추천위원회는 연차대회 당일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한 위원 중 최선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부회장후보추천 우편봉투를 개봉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후보자 3명을 선정한다. ⑥ 위원장은 후보선정 즉시 선정된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락여부를 확인한다. ⑦ 후보자 3명 중 1명이 후보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수락한 회원 2명을, 후보자 3명 중 2명이 후보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추천결과와 차순위 득표자 1인에게 후보자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수락한 회원2명을 후보자로 총회에 제청한다. ⑧ 위원장은 후보추천자를 총회 중에 공지한다. 3. 운영위원은 전임회장단과 현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위원으로 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5.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 12. 19) 6.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직접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7. 회원의 임원선거권의 자격은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정회원인 자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시에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잔임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역대 회장, 현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회장은 당연직 이사 이외에 적절한 수의 이사(선임직 이사라고 한다)를 별도로 선임한다. 단, 회장은 선임직 이사의 2분의 1 내외를 직전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로 이관하고 부회장 선거관리를 별도 장으로 신설함 ※ 제14조제3항의 선임위원 중임은 선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12조로 이관함 ※ 임원선출의 세부사항 결정권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둠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좌동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선임위원의 반수는 중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제23조 제2항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좌동 ③ 삭제
※ 임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규정함 ※ 선임위원 반수 중임에 관해서는 제12조 임원선출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함	
	제5장 부회장 선거관리(본장 신설) 제15조(부회장 선출) 부회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이사회는 회장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당해연도 11월 30일 전까지 부회장 선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1조 제3호 및 제12조 2항에 따른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3.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11조 제3호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 전원으로부터 각각 부회장 후보 2인을 우편으로 추천받은 후 다득표자(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순으로 후보자 3인을 선정한다. 4. 제3호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 3인 중 1인이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수락한 후보자 2인을, 후보자 3인 중 2인이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표자 1인에게 후보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락한 회원 2인을 후보자로 확정한다. 5.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회원에 의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6. 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제4호에 따라 후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 정 회원에게 있다. 7. 부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기관) ①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본조신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② 각 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 부회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명시조항을 신설함 ※ 부회장선거 투표권자 기준을 명료히 규정함 ※ 개표방식 및 당선자 발표 등의 세부사항은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1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감사의 선출 3. 선임직 이사 및 분과위원장의 인준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사업계획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9조제2호에 따른 회원의 제명 5. 회장이 부의하는 회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60인(임임참석자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집회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집행 2.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명 3. 기타 사항	제19조(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지편집위원회 등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분과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기타위원회 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각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처리한다.
※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개칭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 이사회 및 총회의 기능을 회무와 관련하여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	
제21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한국교육학회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좌동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부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의 감사보고도 본 조 2항에 준한다.
	제25조(기금의 종류와 운영) ①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연구비회계, 기금회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회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함.	

4. 개정안 조문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1969. 2. 23. 제정 / 1971. 5. 8. 1차 개정 / 1976. 12. 15. 2차 개정
1977. 12. 10. 3차 개정 / 1979. 12. 8. 4차 개정 / 1989. 12. 9. 5차 개정
1991. 4. 10. 6차 개정 / 1993. 4. 16. 7차 개정 / 1994. 12. 9. 8차 개정
1996. 12. 6. 9차 개정 / 1997. 4. 11. 10차 개정 / 2000. 5. 12. 11차 개정
2004. 5. 8. 12차 개정
2006. 5. 27. 1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와의 관계에서는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재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연차 및 수시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5. 본회 회원 및 일선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교육행정가 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제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해외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약간 명(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에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잔임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역대 회장, 현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회장은 당연직 이사 이외에 적정한 수의 이사(선임직 이사라고 한다)를 별도로 선임한다. 단, 회장은 선임직 이사의 2분의 1 내외를 직전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제22조 제2항의 회계연도와 같다.

-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부회장 선거관리

제15조(부회장 선출) 부회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이사회는 회장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당해연도 11월 30일 전까지 부회장 선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1조 제3호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3.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11조 제3호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 전원으로부터 각각 부회장 후보 2인을 우편으로 추천받은 후 다득표자(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순으로 후보자 3인을 선정한다.
4. 제3호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 3인 중 1인이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수락한 후보자 2인을, 후보자 3인 중 2인이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표자 1인에게 후보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락한 회원 2인을 후보자로 확정한다.
5.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회원에게 의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6. 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제4호에 따라 후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 정회원에게 있다.
7. 부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기관 및 사업

제16조(기관) ①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 ② 각 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감사의 선출 3. 선임직 이사 및 분과위원장의 인준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사업계획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9조제2호에 따른 회원의 제명
5. 회장이 부의하는 회무에 관한 사항

제19조(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지편집위원회 등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분과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각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처리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한국교육학회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부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감사의 감사보고도 본 조 2항에 준한다.

제24조(기금의 종류와 운영) ①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 ② 특별회계는 연구비회계, 기금회계로 한다.

- ③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기금회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관례준용)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교육학회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붙임 3]



학회지 편집·발간규정 개정



1. 개정의 취지

가. 논문의 심사·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학연구의 게재논문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및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학회지 논문에 대한 전체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임.

□ 2006년부터는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결정을 학회지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므로 학회지게재논문의 심사·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함.

2. 주요 내용

□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의 소관으로 단일화 함.

3.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4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 및 학술대회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편집 및 학술대회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학회지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학회지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로 단일화함 ※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출방식 변경	

4. 개정안 조문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편집·발간 규정

1983. 3. 26. 제정
 1993. 4. 16. 제1차 개정 / 1995. 12. 8. 제2차 개정 / 1998. 4. 10. 제3차 개정
 2000. 5. 12. 제4차 개정 / 2001. 9. 1. 제5차 개정 / 2002. 4. 12. 제6차 개정
 2004. 5. 8. 제7차 개정 / 2006. 5. 27. 제8차 개정

제1조 “교육행정학연구”지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제2조 본지는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등 연 3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본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학회지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제6조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교육행정학연구」게재논문 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심사할 경우 게재한다.

제7조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9만원을 학회에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원고분량은 20page를 기준페이지로 하여 25page로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페이지에서부터 1page 초과시 페이지당 3만원의 추가게재료가 부과된다.

제10조 ① 학회지 게재될 논문의 편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순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② 게재 순서는 학교급별, 연구대상이 전체적·포괄적인 것에서 부분적·구체적인 것, 연구내용이 이론중심적인 것에서 실천중심적인 것의 기준에 따라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대회 소식

1.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 일 시 : 2006년 5월 27일 14:00 - 17:00
- ▶ 장 소 :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 ▶ 프로그램 :

[제1발표장] 사회 : 임연기(학회 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 공주대학교)

- 학교경영 자율요인 고찰 최준렬(우석대학교)
- 수시모집제도의 집행분석 :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박소영 / 송선영(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법에서의 명확성 원칙 손희권(명지대학교)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그들은 누구인가?
.....양정호(성균관대학교) / 김지희(한국학교교육연구원) / 이미영(성균관대학교)

[제2발표장] 사회 : 조동섭(학회 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 경인교육대학교)

- 한국의 교육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하버마스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준형(고려대학교)
-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정책 대응 분석 이정미(서울대학교)
-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 박선형 / 이안남(조선대학교)

2. 하계학술대회(교육사회학회와의 공동세미나)

- ▶ 일 시 : 2006. 8. 25(금)
- ▶ 장 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예정)
- ▶ 주요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발표자	토론자
제1부 : 교육양극화의 개념과 배경	사회	교육사회학회
주제1 : 교육양극화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육사회학회	박남기(광주교대)
주제2 : 교육양극화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신현석(고려대)	교육사회학회
주제3 : 교육양극화의 실상	교육사회학회	김성열(경남대)
질의응답(1)		
제2부 : 교육양극화의 대책	사회	성기옥(서울시연수원)
주제1 : 영유아교육의 양극화의 해소대책	교육사회학회	백형찬(서울예대)
주제2 : 도시 저소득층 교육에 대한 대책	이일용(중앙대)	교육사회학회
주제3 : 농어촌교육의 문제와 교육양극화	임연기(공주대)	교육사회학회
주제4 : 코시안에 대한 교육적 대책	교육사회학회	박선형(조선대)
주제5 : 교육여건 격차 해소 대책	김홍주(KEDI)	교육사회학회
질의응답(2)		
※ 자유기고 : 교육양극화의 진단과 대책과 관련된 공모 논문 게재 (교육사회학회와 교육행정학회 공동하게 게재)		

3. 제13회 한·일 공동 국제세미나(일본)

- ▶ 일 시 : 2006년 10월 12일(목) ~ 13일(금)
- ▶ 장 소 : 국립 올림픽기념 청소년 종합센터(동경)
- ▶ 대주제 : 고등교육개혁의 방안과 과제 :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
- ▶ 발 표 : 주철안(부산대), 토론 : 유현숙(KEDI), 진동섭(서울대)

알림 및 회원소식

1.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 신규회원(2006. 3. ~ 2006. 5.)

강낙원	박준형	전성효	김점옥(학생)	이재홍(학생)
김덕근	박진희	정성찬	김택형(학생)	이정훈(학생)
김윤희	신효정	홍상현	남호정(학생)	이창성(학생)
김지연	우상경	홍성길	맹지영(학생)	이희송(학생)
김태수	이강택	강동진(학생)	민병조(학생)	정양덕(학생)
노현경	이범수	김승미(학생)	백원호(학생)	조주영(학생)
노희정	이상우	김영실(학생)	유은수(학생)	최선희(학생)
박선미	이승호	김영화(학생)	이미화(학생)	조인순(학생)
박정신	이찬영	김옥경(학생)	이은진(학생)	경주대학교(기관)

◇ 학회비 납입현황(2006. 3. 1. ~ 2006. 5. 31)

강낙원	30,000	김지연	30,000	서영인	30,000	이미화	20,000
강동진	20,000	김태수	30,000	성기옥	90,000	이범수	30,000
고장완	60,000	김택형	20,000	성병창	30,000	이상우	30,000
고 전	30,000	김현숙	30,000	손희권	30,000	이석열	30,000
공동배	30,000	김효정	30,000	신효정	30,000	이승호	30,000
구자원	20,000	김희대	30,000	양성관	30,000	이승희	90,000
김경이	90,000	남기윤	30,000	오세철	30,000	이은진	20,000
김덕근	30,000	남호정	20,000	오세흠	30,000	이재덕	20,000

김덕희	90,000	노종희	30,000	이상경	30,000	이재홍	20,000
김성렬	30,000	노현경	30,000	우종완	30,000	이정미	60,000
김수철	30,000	노희정	30,000	원유옥	30,000	이정훈	20,000
김승미	20,000	맹지영	20,000	유용운	30,000	이지영	30,000
김승수	90,000	민병조	20,000	유은수	20,000	이진원	20,000
김양현	20,000	박선미	30,000	윤일경	30,000	이찬영	30,000
김영실	20,000	박세훈	30,000	윤정병	30,000	이창성	20,000
김영화	20,000	박정신	30,000	윤홍주	30,000	이학현	30,000
김옥경	20,000	박준형	30,000	이강택	30,000	이희송	20,000
김용주	30,000	박진희	30,000	이광숙	30,000	임연기	30,000
김윤희	30,000	백승관	60,000	이기용	30,000	장한기	30,000
김점옥	20,000	백원호	20,000	이두영	30,000	전성효	30,000
전용환	30,000	조인순	20,000	홍성길	30,000	덕성여대	50,000
전우홍	30,000	조주영	20,000	홍숙정	30,000	부경대	50,000
정길선	30,000	주철안	30,000	경북대	50,000	안양대	50,000
정성찬	30,000	최선희	20,000	경주대	60,000	전주교대	50,000
정수현	30,000	최준렬	30,000	관동대	50,000		
정양덕	20,000	함석동	30,000	광주교대	50,000		
정지선	30,000	허혜경	60,000	남서울대	50,000		
정희옥	30,000	홍상현	30,000	대구교대	50,000		

※ 위 기간 내 회원님의 회비 및 가입비 납부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평생회원 가입현황 ○ 박종렬 400,000원

3. 공지사항

◎ 학회지 배송 안내

- 教育行政學研究 제24권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님께서는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시오.
- 과월호 학회지가 필요하신 회원들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고 학회지대금을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가입하신 회원님들께서는 6월까지 신규가입에 한하여 학회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시오.

- 2004년에서 2006년 현재까지 주소나 기타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이 많으나 학회 사무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및 회원연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안내

◎ 教育行政學研究 제24권 논문 게재 안내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4	1호	2월 28일
	2호	5월 31일
	3호	7월 31일
	4호	10월 31일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및 E-mail 접수)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출판을 위한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우체국 703108-01-002649(예금주: 한국교육행정학회)
-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정개정(2004. 5. 8. 시행)으로 인하여 23권 1호부터는 "학회지원고작성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sea.or.kr> 참조)

◎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회비(2006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2007년 변경 회비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우체국 703108-01-002649 한국교육행정학회)

◎ 평생회원 모집 안내

- 교육행정학회 임시총회 의결사항으로 평생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의 자격은 2006년 현재 만 55세 이상 (1950년도 이전 출생자)인 정회원이며 회비는 40만원입니다. 해당되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내(우당교육관 404호)
-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 □ 전화번호 : 053-950-5820 □ Fax : 053-950-5820
- 회 장 : 박종렬 (053-950-5820, 011-347-5820)
- 사무국 : 정금현 사무국장(016-754-3694) 권현정 간사(053-950-5820, 011-9171-9658)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연간 4권 - 뉴스레터 연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팩스우송 후 회비납부